

프랑스에서는 정부 주도로 산업용 수용가를 보호

1. 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장기적 · 안정적 전력공급제도의 개시

프랑스 蠶濟 · 財政 · 續續에서는 산업용 전력수용가의 국외 이전을 막기 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적인 정비에 따라 철강회사, 화학회사 등 대형 수용가 7개 사가 중심이 되어 장기전력조달회사 Exeltium사가 2006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각 가맹국에서 소매전력시장의 시장 개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참여자 간에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2003년경까지는 원유 등의 연료가격이 저렴한 수준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신규 사업참여자는 가스화력발전설비의 건설을 추진하여 특히 값싼 도매전력거래소로부터의 전력을 조달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산업용 수용가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에서 신규 참여자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의 폭등과 200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 거래의 영향으로 도매전력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2003년 평균 29유로/MWh에서 2005년 평균 47유로/MWh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전원을 주 업종으로 하는 프랑스電諮鄴榜(EDF)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한번 이탈한 수용가가 EDF와 재계약할 경우 시장가격에 의거한 전기요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그대로라면 이전보다도 값이 비싼 전기요금이 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이들 수용가의 대부분은 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도매전력가격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외 이전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 장기전력조달제도란?

이 제도는, 복수의 산업용 수용가가 컨소시엄을 출자 · 설립하여, 이 컨소시엄이 발전사업자(발전설비)에게 직접투자하는 것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관해서는

2005 12월의 「2005년도 財政稿」 및 2006년 5월의 「장기전력조달회사에 관한 稿」에서 구체적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인 골격은

- ① 복수의 산업용 수용가가 출자하고 금융기관이 대부해주는 컨소시엄(長驥電話調麟鄴榜)을 설립한다.
- ② 컨소시엄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수준, 배당이율 등을 고려한 입찰에 의하여 장기전력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리수준 등을 고려한 입찰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 ③ 컨소시엄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 시에 초기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공급전력량에 따라 중량 요금을 지불한다.
- ④ 장기전력조달계약의 기간은 최저 15년으로 한다.
- ⑤ 조달되는 전력은 연간 150~200억KWh
- ⑥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산업용 수용가는 컨소시엄에 대한 자본출자금의 50%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급전력은 원자력 전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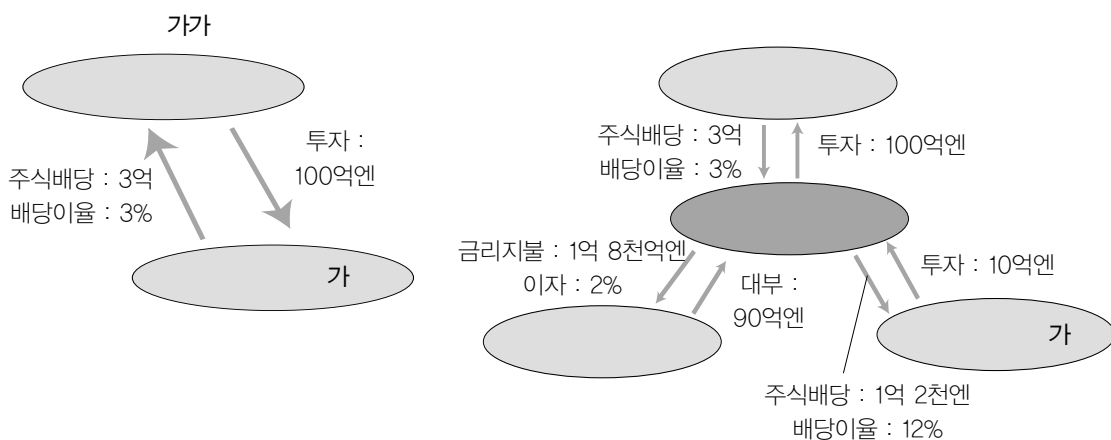
이 컨소시엄을 통한 전력조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의 ①에 기술된 바와 같이 「레버리지의 효과(지레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발전사업자(발전설비)에 대하여 직접투자함으로써 컨소시엄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금리보다도 컨소시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이율이 상회하게 되면 거래 투자수익으로서 수입·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그림 참조). 이때문에 컨소시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발전코스트에 기초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

3. 컨소시엄에 참가할 수 있는 산업용 수용가의 요건은?

다만, 이 장기전력조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 수용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

1 |



부의 설명에 의하면 ① 산출(獵出)되는 부가가치 1유로에 대하여 최저 2.5KWh 이상의 전력소비가 필요하도록 할 것

② 오프피크 시(평일 오후 8시~오전 8시 및 휴일)의 소비전력량이 55% 이상일 것

③ 계약된 전력을 연간 8,000시간 이상 이용할 것

④ 단일 수용가는 컨소시엄의 자본 25%로 제한되는 외에, 그 경우에 출자의 상한은 60만 유로로 할 것-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합치하는 수용가는, 철강, 화학, 제지 업계 등의 약 60개 사 정도로 알려져있으며 자유화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전력량의 약 20% 정도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4. 장기전력조달제도의 과제

이 장기전력조달제도는 산업용 수용가가 주관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계에서도 드문 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의 틀이 어떻게 운용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 예견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이 장기전력조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 수용가와 다른 전력수용가의 차별화는 경쟁법 상의 문제로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유럽뿔뿔회는 이 제도에 대하여 자유화시장을 왜곡하지 않을지 앞으로 그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하고 있다.

(“電氣協會報”)